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8. 9. 7.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98. 9. 5

다. 상 정 일 자 : 98. 9. 14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자 정 부 웅

나. 개정사유

ㅇ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촌 경제의 안정대책으로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99. 2. 28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

다. 주요내용

ㅇ 제22조 1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단,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는 도축세 추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ㅇ 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기 허가된 사항이며,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의 면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ㅇ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해서만 도축세를 면제하게 되었으므로 판매등 유통 경고에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제22조의1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1(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